

인천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2386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5. 8.경 D은행과 대출원금 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17. E은행과 대출원금 3,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33.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1. D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7711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13. “피고(C)는 원고에게 9,301,529원과 그중 7,738,930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1. E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317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C)는 원고에게 4,480,077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2017. 2. 3.자 지급명령이 2017. 3.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아버지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4. 11.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G, H, C가 있었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유일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6. 8.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0. 6.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외에도 I은행에 대한 여신채무, J카드에 대한 카드론 채무 등이 존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72년에 망인과 결혼한 이래 17년간 시아버지를 부양하였고, 망인이 2016년경부터

뇌졸중,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에 사망할 무렵까지 간병을 도맡아 하였으며,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과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과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C는 결혼 당시 피고와 망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지분이 없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망인 사망 무렵까지 간병을 한 것이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의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C의 증언은 막연히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대주셨다.’, ‘망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적금 2,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엽

별지